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3.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2003. 7. 2)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3. 7. 3)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2003. 7.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이 은 규

가. 제안이유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02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2002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79억 7,13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37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180억 1,860만 4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2억 6,787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31억 5,896만 4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1%로 전년도의 93.5%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161억 6,353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22억 7,244만 2천원으로 실제징수율은 87.9%가 되겠으며 전년도의 89.1%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더욱 더 징수노력이 요구됨.

○ 2002회계연도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27억 2,941만 8천원 대비 약 19.5%에 해당하는 5억 3,301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97억 1,562만 5천원 대비 약 12.2%에 해당하는 11억 9,334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매년 체납금에 대한 징수실적은 극히 저조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체납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2002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4.5%에 해당하는 1,487억 7,985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외 17건에 73억 9,863만 2천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1.3%(전년도 11.7%, 불용액 219억 3,440만 9천원)에 해당하는 198억 1,151만 5천원이 되겠음.

○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98억 1,151만 5천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0억 1,844만 6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9억 27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73억 6,326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 2,705만 3천원이 되겠음.

○ 2002회계연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

은 342억 2,6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 외 2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1억 1,08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3,71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492억 416만 6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6.5%에 해당하는 327억 6,358만 8천원이 되겠으나 주로 주차위반과태료가 미 수납된 체납액은 164억 4,057만 8천원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됨.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343억 3,711만 2천원 대비 약 25.6%에 해당하는 88억 97만 1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음.

<검토의견>

○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98억 1,151만 5천원 대비 약 87.6%에 해당하는 173억 6,326만 9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사료되며, 특히 2억원 이상 불용된 세목 중 동행정운영 자체사업에 편성된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23억 412만 7천원과 지역경제 공기업경상전출금 9억 14만 1천원의 52%에 해당하는 4억 6,633만 4천원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청소환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경기도 고양시에 대한 지원비 3억원과 녹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액 11억 8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사료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더라면 동 재원을 타 용도로 활용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임.

○ 200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492

억 416만 6천원 대비 약 33.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64억 4,057만 8천원 중에서 136억 6,109만 5천원이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더욱 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함에도 주차장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확보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동청사 부지매입비의 불용사유는?
- 답변요지(황동연 주민자치과장) : 5개동 청사부지매입비 중 1개동만 성사되고 4개동은 여건 및 감정가와 매도가의 차이 등으로 불용됨.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전체예산 중 2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계획 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닌가?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2001년 219억원의 불용액 발생, 2002년 19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년차적으로 불용액은 감소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충실히 집행할 것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공원녹지과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 답변요지(장종환 기획예산과장) : 10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

은 시기적으로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였음.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자동차세 체납액이 8, 900만원이 되도록 방치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 답변요지(신규식 세무1과장) : 구세의 체납액 징수율은 19.5%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52% 수준으로 번호 판영치 및 인터넷공매를 통한 징수와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율이 72.9%인 이유는?

○ 답변요지(박남규 재활용팀장) :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이 아닌 정포 및 회사에 부과시 전출 등으로 체납발생.

○ 질의요지(김광섭 위원) : 공기업경상전출금의 52%가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정원배 지역경제과장) :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작년 5월 2일 개관되고, 수강료 등의 당초 수입목표를 초과함으로써 적자보존금이 줄어들어 발생한 불용액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가정복지과의 불용액 발생사유에서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부분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변요지(김경숙 가정복지과장) : 종사원교체시 봉급호봉의 차이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며, 보육비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함.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세외수입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영식 주택과장) : 건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2%이며, 주민들은 과태료납부를 벌금으로 오인하여 거부반응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세외수입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종선 교통행정과장) : 과태료에 대한 벌금성격으로 징수율이 낮고 독촉 후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나, 폐차시까지 미납인 경향이 있음.

○ 답변요지(박도식 교통지도과장) :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불만 및 주민의식 결여로 징수에 어려움 있으나, 채권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에서 배제조치, 번호판영치 등 징수에 노력함.

○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투자된 예산액은?

○ 답변요지(김종선 교통행정과장) : 1억 2,700만원임.

○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보조금이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강수경 지역보건과장) : 암검진사업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간의 협의가 늦어짐으로써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6,643만원의 불용액 발생함.

○ 답변요지(강선숙 의무팀장) : 65세이상 약제비 청구대상자 감소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 불용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방역예산 910만원 불용 이유는?

○ 답변요지(강수경 지역보건과장) : 연막소독을 지양하여 불용 되었으나, 자율방역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장) : 의정운영공통운영비의 234만 7천원이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최승범 사무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됨.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장) : 의사운영비 7,100여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 답변요지(최승범 사무국장) : 대체적으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6.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제출내역

- 2002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 자료(결산서에 포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세입 · 세출결산 총괄설명

■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10,384,42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095,936,14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10,384,428,000원
(전년도 이월금 18,129,445,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627,488,744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4,468,447,40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64,468,447,40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4,479,553,920원
 - 사고이월 3,847,592,05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76,053,29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565,248,140원임.

■ 2002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175,990,00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267,871,06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75,990,002,000원
(전년도 이월금 18,018,604,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48,779,853,767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0,488,017,29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0,488,017,29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4,479,553,920원
 - 사고이월 2,919,078,65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27,053,66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62,331,064원임.

■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현액 34,394,42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28,065,08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4,394,426,000원
(전년도 이월금 110,841,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8,847,634,977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3,980,430,10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3,980,430,10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928,513,4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999,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02,917,076원임.

◎ 특별회계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57,31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476,72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7,31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6,663,796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7,812,9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7,812,9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04,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08,450원임.

◎ 주차장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34,337,11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63,588,35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4,337,112,000원
(전년도 이월금 110,841,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8,800,971,181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3,962,617,17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3,962,617,17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928,513,4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295,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85,808,626원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㉓	세입결산액 ㉔	세출결산액 ㉕	임 여 금 ㉖=(㉔-㉕)	임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㉗	사고이월 ㉘	보조금사용 잔 액 ㉙	순세계임여금 (㉗-㉘-㉙-㉚)
합 계	210,384,428,000	222,095,936,146	157,627,488,744	64,468,447,402	4,479,553,920	3,847,592,050	576,053,292	55,565,248,140
일반회계	175,990,002,000	189,267,871,063	148,779,853,767	40,488,017,296	4,479,553,920	2,919,078,650	527,053,662	32,562,331,064
특별회계	34,394,426,000	32,828,065,083	8,847,634,977	23,980,430,106	0	928,513,400	48,999,630	23,002,917,076
의료보호 기 금	57,314,000	64,476,726	46,663,796	17,812,930	0		704,480	17,108,450
주차장	34,337,112,000	32,763,588,357	8,800,971,181	23,962,617,176	0	928,513,400	48,295,150	22,985,808,626

세 입 결 산 총 관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예산현액 ㉔	징수결정액 ㉕	수 납 액			미수납액 ㉖=(㉔-㉗)	미수납액 처리		비율 ㉘/㉔
			수납총액 ㉗	과 오 납 반환액 ㉙	실제수납액 ㉚=(㉗-㉙)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210,384,428,000	252,523,310,031	222,507,413,766	411,477,620	222,095,936,146	30,427,373,885	1,132,476,930	29,294,896,955	105.6
일반회계	175,990,002,000	203,158,964,993	189,677,173,883	409,302,820	189,267,871,063	13,891,093,930	730,106,930	13,160,987,000	107.5
특별회계	34,394,426,000	49,364,345,038	32,830,239,883	2,174,800	32,828,065,083	16,536,279,955	402,370,000	16,133,909,955	95.4
의료보호 기 금	57,314,000	160,178,403	64,476,726	0	64,476,726	95,701,677	0	95,701,677	112.5
주차장	34,337,112,000	49,204,166,635	32,765,763,157	2,174,800	32,763,588,357	16,440,578,278	402,370,000	16,038,208,278	95.4

세 출 결 산 총 관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액 ㉔	예산성립후 증 감 액 ㉕	예산현액 ㉖ = (㉔ + ㉕)	지출원인 형위액 ㉗	지 출 액 ㉘	다음연도 이월액 ㉙	불 용 액 (㉘ - ㉙ - ㉚)
합 계	192,254,983,000	18,129,445,000	210,384,428,000	165,080,134,714	157,627,488,744	8,327,145,970	44,429,793,286
일반회계	157,971,398,000	18,018,604,000	175,990,002,000	155,303,986,337	148,779,853,767	7,398,632,570	19,811,515,663
특별회계	34,283,585,000	110,841,000	34,394,426,000	9,776,148,377	8,847,634,977	928,513,400	24,618,277,623
의료보호 기 금	57,314,000	0	57,314,000	46,663,796	46,663,796	0	10,650,204
주차장	34,226,271,000	110,841,000	34,337,112,000	9,729,484,581	8,800,971,181	928,513,400	24,607,627,419